



KADA Anti-Doping Guide for Professional Sports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가이드



지도자용



In partnership with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OREA ANTI-DOPING AGENCY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2006년 11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도핑방지기구(NADO: National Anti-Doping Organization)입니다.

KADA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도핑방지 교육, 홍보, 도핑관리, 조사, 과학연구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도핑방지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금지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깨끗한 스포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

스포츠에서 선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 환경 조성, 기술 교육, 컨디션 조절 등을 관리하는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선수지원요원의 일원으로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랜 노력을 통해 쌓아온 성적과 명예, 경력이 작은 부주의와 무지로 무너지지 않도록, 선수와 지도자는 항상 도핑방지 관련 권리와 의무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와 코칭을 통해 선수를 바른길로 이끄는 보호자이자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핑방지규정위반

Anti-Doping Rule Violation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9조 제1~11호에서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호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 존재

제2호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 또는 사용 시도

제3호

선수가 시료채취를 회피 또는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료채취의 실패를 야기

제4호

소제지정보 불이행 (12개월 내 소제지정보 제출불이행 및 검사불이행이 합산 3회 발생한 경우)

제5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도핑관리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행위 시도

제6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제7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 시도

제8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선수에게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투여 또는 투여 시도

제9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위반을 공모하거나 공모 시도 (협조·조장·원조·교사·음모·은혜등)

제10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제재 중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과 연루

제11호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도핑방지규정위반 등과 관련하여 타인의 제보를 제지하거나 그에 대한 보복 또는 위협



만약 지도자가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하거나 선수가 금지약물을 사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등 도핑방지규정위반 제5호 ~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도자 역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KADA 누리집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9조 참조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안내사항

경기기간 중 정의

프로스포츠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식경기의 리그 기간으로 정함

* 개인종목 또는 단일대회의 경우 선수가 참가예정인 경기의 전일 오후 11:59부터 해당경기 종료일 또는 시료채취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

구분	공식경기	
	경기기간 중 (리그 또는 단일경기 또는 대회)	경기기간 외 (리그기간 중 경기기간 중이 아닌 경기)
KBO	KBO 시범경기,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KBO 퓨처스리그	울스타전
KBL	시범경기, 정규경기, 플레이오프 경기, 컵대회	울스타전
WKBL	정규경기, 플레이오프 경기	울스타전
KOVO	시범경기, 컵대회, V-리그 (정규리그, 준플레이오프전, 플레이오프전, 챔피언결정전 포함)	울스타전, 국제경기(탐매치 등)
KPGA/ KLPGA	투어대회, 회원선발전, 시드전 * 골프 종목은 공식경기에 대한 별도 자체 규정 없음 ** 단일경기 또는 대회의 시종일 전일 오후 11:59부터 마지막 경기(시료채취종료일)까지	-

'경기기간 중' 기간에 '경기기간 외'로 보는 예외상황 5가지

- 부상자명단에 등록되거나 부상·질병 선수로 공시되는 기간
- 부상자명단 등록기간, 부상·질병 선수 공시기간을 초과한 심각한 부상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거나 시즌아웃으로 공시된 기간
- 구단이 포스트시즌에 참가하지 않는 기간
- 공식적으로 리그가 중단된 기간
- 울스타 기간



※ 선수의 주의사항

부상자명단 등 '경기기간 외'로 간주된 기간에 GC(글루코코르티코이드) 유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부상 복귀 후 '경기기간 중' 도핑검사에서 GC가 검출되는 경우 비정상분석결과로 인한 도핑방지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 이에 선수는 GC 국소주사 등 '경기기간 외'에 허용되는 약물을 사용하고자는 경우 투여경로별 배출 기간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GC 유지 약물을 '경기기간 외(허용 시점)'에 사용 후 '경기기간 중(금지시점)' 검사에서 검출된 경우 사후 치료목적 사용면책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을 받으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프로스포츠 선수가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른 해당 국제경기단체의 도핑방지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켜주세요! 알아두세요! 선수의 권리와 의무

선수의 권리

- 시료채취요원(도핑검사관, 샤프롱)의 신분을 확인할 권리
- 필요 시, 1명의 선수대리인과 1명의 통역을 동반할 권리
-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핑관리실 도착 연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장애인 또는 미성년 선수의 경우, 절차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시료채취용품의 선택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료채취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권리

선수의 의무

- 검사대상자 통지시점부터 시료채취 후 도핑관리실을 떠날때까지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의 직접적인 관찰을 받아야 함
- 시료가 제공되는 동안 동성의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에 의해 관찰되며, 통지 후 첫 번째 시료를 제공하여야 함
-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함
- 도핑관리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함
- 시료채취 절차를 준수해야하며 거부 또는 비준수 시,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합당한 사유로 도핑검사관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도핑관리실에 도착하여야 함

'선수대리인'으로서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는 도핑검사 절차에서 '선수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국제경기연맹 등 도핑방지기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선수대리인이란?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선수가 도핑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도핑관리실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성인(만 18세 이상)
- 지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 팀닥터, 부모 등
- 선수대리인은 도핑검사서에 도핑검사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명 기입

지도자는 **선수대리인**으로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는지 등 검사과정에서 **선수의 권리가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핑검사 절차

경기장, 거주지, 훈련장 등
선수가 있는 곳 어디든 도핑검사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01. 검사대상자 통지 및 동반

- 도핑검사관(DCO) 또는 샤프롱(Chaperone)으로부터 검사대상자로 선정 되었음을 통지받습니다.
- 선수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도핑관리실로 이동합니다.

02. 시료제공

소 변

- 도핑검사관의 안내에 따라 한 개의 시료채취 용기(Vessel)를 선택합니다.
- 동성의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과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여 관찰 하에 90ml 이상의 소변을 용기 안에 제공합니다.



혈 액

- 선수는 도핑관리실 도착 후 시료 채취 제공 전까지 발을 바닥에 대고 앉은 채 10분간의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 도핑검사관의 안내에 따라 한 개의 혈액샤로키트를 선택합니다.
- 선수가 키트를 직접 개봉하고, 혈액채취요원(BCO)이 혈액을 채취합니다.

03. 시료봉인

- 시료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봉 흔적이 없는지, 오염이나 파손은 없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 확인 후 자신의 소변시료를 키트에 나누어 담고 직접 봉인합니다.

- 선수는 혈액시료가 담긴 튜브를 보관용기에 넣고 직접 봉인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선수 요청에 따라 도핑검사관 또는 선수대리인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04. 서류작성

- 검사서 내용에 오류 또는 빈칸이 있는지 확인한 후 최종 서명을 합니다.
- 도핑검사관으로부터 검사서 선수 사본을 수령하고 도핑관리실을 나갑니다.

도핑관리실 이동

도핑관리실
도착 지연 요청
가능 사항

- 사상식 참석	- 언론 인터뷰	- 훈련 또는 정리운동
- 후속경기 참가	- 대리인 또는 통역인료석	- 옷 갈아입기
- 필요한 의료조치	- 신분증 가져오기	- 기타 정당한 예외적인 상황

도핑검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수는 **가능한 빨리** 도핑관리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핑관리실 도착 지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시료채취요원(도핑검사관(DCO) 또는 샤프롱)이 동반하여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Prohibited Substances & Methods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서는 선수가 사용해서는 안되는 약물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목적사용면책

Therapeutic Use Exemptions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함

금지목록 국제표준이란?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선정 · 목록화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지목록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필요 시에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 KADA 누리집에서 「금지목록 국제표준」 국문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약물의 결정 기준



·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약물 사용 전, KADA 누리집에서 '금지약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금지 여부를 반드시 검색하세요.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방법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 작성

진단서 혹은 소견서
(최근 3개월 이내),
검사기록 첨부

서류제출
(서류제출방법 3가지 기입)

TUE 유의사항

- 사용할 의약품의 금지약물여부 확인
-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 확인
-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 상시 금지약물

※ TUE 빠르게 알기!

1. TUE 신청이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아님
2. 반드시 약물사용 이전에 TUE 신청
3. TUE는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에 의해 심사, 승인/불승인 처리 됨 (위원회 직원들은 승인여부에 관여하는 바가 없음)

사후TUE 신청방법

- * 응급 병원 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사후 TUE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실 방문 자체가 응급상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 사후 TUE 신청 또한 승인 또는 불승인 될 수 있습니다.

GC와 치료목적사용면책

※GC: 글루코코르티코이드

GC TUE 체크리스트

□	신청서
	모든 항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
□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병력: 발병(재발) 시점, 질병 또는 손상의 치료과정 기술
	상세한 증상 및 소견의 경과 금지약물 · 방법 사용의 필요성 상세하게 기재
□	진료기록
	동일 손상 부위에 대한 치료 내역 치료 반응 및 경과 기록
	통증 기록: 양상, 통증 점수 등 상세하게 기재
□	검사결과 등
	제출 가능한 경우, 영상 소견(판독지, 영상자료 모두 제출) MRI, CT, X선, 초음파 검사 등 피부질환의 경우, 사진 자료(선수 특정 가능해야 함)

GC 국소주사와 대체치료

승인기준 ③ 관련

TUE 승인 기준

- ① 관련 임상 증거에 따라 진단된 질병을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방법의 사용이 필요해야 함
- ② 금지약물·방법 사용이 회복 이상의 추가적인 경이력 향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 ③ 금지약물·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함
- ④ 금지약물·방법 사용의 필요성이 이전 사용 여부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함

GC 국소주사와 대체 치료

대체 치료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ICE(보호-휴식-냉치료-압박-가상) ·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 근육이완제 등 · 물리치료(온열 치료, 견인 치료 등) · 체외충격파 치료 · 보조기 착용 또는 재활치료 운동 등
안내 사항	<p>금지약물·방법 사용을 고려하기 전, 적절한 대체 치료를 충분한 기간 동안 받아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모든 대체 치료를 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수 주치의는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처방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함 ☞ 타 의뢰기관에서 대체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받은 실제 진료기록을 제출 필요 ☞ 짧은 기간 대체 치료 몇 번 시행이 아닌 대체 치료 후 증상 호전 등 경과에 따른 치료 효과를 판단하여 필요시에만 금지약물 사용이 고려되어야 함 ☞ 통증 정도는 선수마다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으므로 통증이 시작된 시점부터 그 경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료기록 확보 필요

금지약물과 치료목적사용면책 Q&A

선수는 어떠한 약물도 사용하지 못하나요?

치료 또는 부상회복을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복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사용(복용) 가능**합니다.

* Therapeutic Use Exemption

TUE를 신청하면 모든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TUE를 신청하면, 의사로 이루어진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에서 아래에 명시된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 금지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
-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이 선수의 건강회복 이외의 추가적인 경이력 향상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외에 적절한 대체 치료가 없는 경우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1단계
KADA에서 해당 금지약물의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승인 유무 확인

2단계
해당 금지약물 발생에 대한 TUE 승인내역이 없을 경우 비정상분석결과발생 통지 및 선수의 답변요청

3단계
선수 답변 및 검토결과에 따라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 통지

4단계
선수가 청문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청문회 개최 후 제재부과

* 규정위반 혐의를 통지받은 선수는 청문의 권리를 가집니다.
* 제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재 사실도 공개되나요?

KADA는 누리집을 통해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선수 명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단, 제재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감기, 고혈압, 당뇨, ADHD 등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도 금지약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충제 및 건강보조제 또한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재지정보 제출

Whereabouts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함

소재지정보 제출



소재지정보가 뭐죠?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경기기간 외 도핑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수의 훈련·경기일정, 거주지 등 소재지정보를 관리합니다.

프로구단 검사명부 (Team Testing Pool)

1. 구단의 합숙장소
2. 훈련일정, 그 밖의 정기적인 활동
3. 공식적인 훈련 금지 기간

프로선수 검사명부 (Professional Athlete Testing Pool)

1. 선수의 거주지
2. 훈련일정, 그 밖의 정기적인 활동
3. 검사가 가능한 특정 60분과 그 장소

'프로선수 검사명부' 선수의 소재지정보 제출

선수가 프로선수 검사명부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도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지침에 따라 비시즌 기간에 최소 1회 이상의 팀 소재지를 제출하고 선수의 소재지정보가 항상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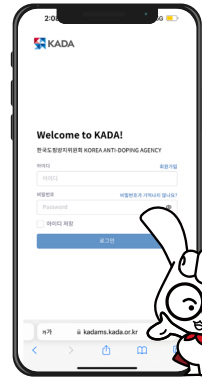


소재지정보 제출 내용 및 제출 기한

	프로구단 검사명부	프로선수 검사명부
운영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출기간 및 횟수	비시즌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제출 주체	구단	선수 본인
제출 내용	팀의 소재지 정보	자신의 소재지 정보
세부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단의 합숙 장소 (예: 훈련지, 임시 숙소, 호텔 등) 2. 훈련 일정, 그 밖의 정기적인 활동 3. 공식적인 훈련 금지 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수의 거주지 (예: 자택, 훈련지, 임시 숙소, 호텔 등) 2. 훈련 일정, 그 밖의 정기적인 활동 3. 검사가 가능한 '특정 60분' 과 그 장소

* 소재지정보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한 안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소재지정보 입력 후, 거주지, 훈련 또는 경기일정이 변경될 경우 즉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 * 특정구단에서 한 시즌에 2명 이상의 선수가 규정 위반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구단에 대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 구단이 제25조의 프로구단 검사명부에 따른 소재지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구단 표적 검사 및 추가 검사, 1명 이상의 선수를 '프로선수 검사명부'에 포함하는 등의 각목이 적용됨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프로선수 연2회 도핑방지교육 의무안내

프로선수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14조에 따라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간 2회의 도핑방지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도핑방지교육 용어사용 주의

권장 표현

구분	권장 표현	예시
반도핑	도핑방지	세계반도핑기구 ▶ 세계도핑방지기구 ※ 유네스코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은 예외

권장 표현

구분	올바른 표현	예시
도핑교육	도핑방지교육	도핑교육 실시 ▶ 도핑방지교육 실시
도핑위반	도핑방지규정위반	도핑방지규정위반 발생
양성반응, 양성결과	비정상분석결과	비정상분석결과 발생
도핑실	도핑관리실	도핑실 위치 안내 ▶ 도핑관리실 위치 안내
한국도핑위원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규정	한국도핑방지규정	
실험실, 시험실	분석기관	

안내(외래어 다듬기)

구분(외래어 등)	다듬은말	예시
아웃리치	현장교육	아웃리치 요청 ▶ 현장교육 요청
도핑RTP대상자	검사대상명부(RTP)선수	도핑RTP대상자 관리 철저 ▶ 검사대상명부선수관리 철저
도핑테스트	도핑검사	



이용방법

- 1 온라인 교육센터
edu.kada.or.kr 접속
- 2 가입 / 로그인
- 3 수강
- 4 교육센터 내 [마이페이지-교육 이수율] 발급 가능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교육 추천 커리큘럼

대상별 교육

다양한 대상에 대한 도핑방지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프로선수, 장애인선수, 국제대회 사전교육 등

주제별 교육

다양한 도핑방지에 대한 교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TUE, 소재지정보, 금지약물 등

-도핑방지교육 이수 예시-

-1회차-

대상별 교육

프로선수대상
도핑방지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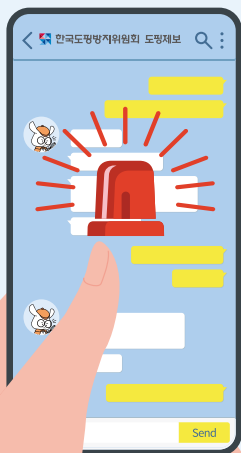
-2회차-

주제별 교육

치료목적 사용면책
금지목록 국제표준
소재지정보 제출방법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 지도자, 조력자 등을 알고 있는

제보자를 찾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바로 제보하세요!

제보는 이곳으로!



카톡 플러스친구

